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80

제출년월일 : 1999.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낙농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와 수수료 징수 등 축산위생 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안 제1조)
-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검사·시험의뢰서와 검체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검사·시험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 및검사의기준」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 원유공영검사 수수료의 징수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함(안 제5조, 부칙 제2조2항)
-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수행상 의뢰한 경우와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조)
- 검사결과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를 반환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0조)

3. 의 안 전 문 : 따로붙임

4.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5. 참고자료

- 도축검사수수료 조정(안) : 따로붙임
- 원유검사수수료징수(안) : 따로붙임
- 기타 보조자료 : 따로붙임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 시험 등 의뢰) ①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의 정한 검사신청서, 축산물검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수출용잔류물질검사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별표1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구매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①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잔류물질검사성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검사·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 ③검사·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송부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2에서 정한 도축 및 원유 검사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동 기준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성적서를 재교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검사·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축산물 단속에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 ②도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검사·시험등 불응) 검사·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과 변질, 변성 및 부패 등으로 검사·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검사결과외의 광고 등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등의 결과는 검사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의뢰한 검사·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낙농진흥법에 의거한 농가별 집유원유의 검사수수료 징수는 원유 검사 공영화 실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내지 아목을 각각 나목내지 사목으로 한다.

[별표1]

시험용 검체소요량

검체의 종류		검체소요량(단위)	비 고
원 료	식육	500(g)	
	원유	500(ml)	원유공영검사 항목당 20(ml)
가 공 품	식육가공품	500(g·ml)	
	유가공품	500(g·ml)	
	알가공품	200(g·ml)	
<p>1. 검체소요량은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p> <p>2. 포장된 가공품은 최소 포장단위별로 채취하며, 최소 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개봉시 오염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p> <p>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할 수 있다. (이화학검사용 : 3개, 미생물검사용 3개, 용량검사 3개)</p> <p>4. 기타 검사시료의 채취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 기준에 의한다.</p>			

[별표2]

도축 및 원유검사 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도축검사		
가. 소	1,200원	두당
나. 돼지(염소, 양 포함)	400원	두당
2. 원유검사		
가. 세균수	500원	원유검사 공영화에 따른 농가별 집유 원유에 한함
나. 체세포수	50원	
다. 유성분(항목당)	50원	
라. 잔류물질 간이검사	100원	
마. 기타 가수검사 등	50원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육류잔류물질검사의뢰서

1. 수출회사명 :
2. 검역물 :

제품고유번호	시료번호	출하농장명	수출예정량	시료량	비고

3. 검사대상물질명 :
4. 검사의뢰목적 :
5. 수출(선적)예정일 :
6. 수출국 :
7. 가공기간 :

위와 같이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확인검역관 :

성명 :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잔류물질검사성적서

1. 발급번호 :

2. 회 사 명					
3. 검 역 물					
4. 검 사 일 자			5.수출예정물량		
6.검사대상물질					
제품고유번호	시료번호	출하농장명	수출예정량	검사결과	비 고
(이 성적은 검사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검사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함)					

의뢰하신 검역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

년 월 일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 (직인)

관련법령 발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수수료) ①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9조(검사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낙농진흥법】

제14조(원유검사) ①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원유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8-2호】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별표 1]

가. 축산물 검사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비고
1. 축산물 의뢰검사 수수료(법 제5조제1항 관련)		시료당
가. 축산물		
1) 이화학적 검사		
가) 피·에이치(pH)검사	1,100	
나) 비중검사	1,100	
다) 굴절률검사	1,100	
라) 진공도검사	1,100	
마) 미량영양성분(비타민 A·B ₁ ·B ₂ ·나이아신·칼슘·인·철 등)검사(1항목당 정량)	6,000	
바) 잔류농약검사		
○ 동시다성분검사(5종농약기준)	278,400	
- 1농약 추가시 마다	10,300	
○ 단성분검사(1종농약)	81,400	
사) 독소(아플라독소)검사(정성검사)	20,000	
아) 독소(아플라독소)검사(정량검사)	25,000	
자) 우유류 항생물질검출 검사	4,000	
차) 항생물질검사(정량검사)	25,000	
카) 합성항균제검사(1성분당 정량)	25,800	
타) 성장촉진제검사(1성분당 정량)	180,300	
파) 산화방지제	55,000	
하) 보존료검사	33,000	
거) 착색료검사(타르색소)	13,000	
너) 발색제검사(아질산염)	26,500	
더) 기 타		
○ 적정법	5,000	
○ 기기분석법	30,000	
러) 상기외의 시험(1항목당)	유사시험항 목에 준함	

구 분	수수료 (원)	비고
2) 미생물학적 검사		
가) 대장균군검사	5,500	
나) 일반세균수검사	4,400	
다) 유산균수검사	5,500	
라) 대장균군수검사	5,500	
마) 식중독균검사		
○ 살모넬라검사	6,600	
○ 병원성대장균검사	6,600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i>Clostridium perfringens</i>)	8,800	
○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i>Clostridium botulinum</i>)	8,800	
○ 황색포도상구균(<i>Staphylococcus aureus</i>)	6,000	
바) 진균수검사	5,000	
사) 기타 미생물검사	6,600	
나. 기구·용기 및 포장		
1) 이화학적검사		
가) 페놀검사	1,100	
나) 중금속검사	1,100	
다) 형광증백제검사	1,100	
라) 색소검사	1,300	
마) 염화비닐수지(PVC) 규격검사	22,000	
바)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3,000	
2. 수입축산물 검사수수료(법제15조제2항 관련)		
가. 수입축산물검사	20,000	수입신고 건 당
단, 아래의 수입축산물은 검사수수료를 면제함		
○ 연구,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수출용원자재를 포함한다)		
○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에 검사의뢰하는 수입축산물		
3. 제1호내지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개발되거나 처음 수입된 축산물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검사성적서등 재교부 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비고
검사성적서	1 통	100
외국어번역문	1 통	200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 본	요 액
1. 증명 가. ~ 다. “생략”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등 가. 일반행정관계 (1)~(3) “생략” 나. 농수산 관계 (1) 축산물검사 수수료 ㉠ 도축검사 ○ 소, 말 ○ 돼지, 양 다. ~ 아. “생략”	1두 ”	500 130

도축검사 수수료 조정 (안)

- 목 차 -

I. 조정의 필요성

II. 현 황

III. 조정검토

IV. 조정검토 의견

V. 원가분석표 및 참고자료

도축검사 수수료 조정 (안)

I. 조정의 필요성

- ☑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장기간 미조정되었고
- ☑ 현행 징수금액은 원가를 감안하면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경영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 ☑ 축산물의 위생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도축검사 역량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 ☑ 소비자의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 조정함으로서
- ☑ 확충된 재원으로 도축검사 능력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 ☑ 우리도의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II. 현 황

☑ 현행 도축검사 수수료

	'75년 ~	'95년 ~
○ 牛, 馬 (원/두)	400	500
○ 羊, 豚 (원/두)	80	130

※ '95년도에 수수료 항목 정비시 일괄 소폭인상

☑ 도축검사 두수

	'96년	'97년	'98년	'96~'98 (평균)
○ 牛, 馬 (천두)	43	73	78	65
○ 羊, 豚 (천두)	613	530	443	529

※ 도내 도축장수 : 8개소

☑ 도축검사 수수료 징수액

	'96년	'97년	'98년
計 (백만원)	102	106	97
○ 牛, 馬 (천두)	22	37	39
○ 羊, 豚 (천두)	80	69	58

도축검사 수수료는 도세이며 수입증지로 징수

Ⅲ. 조정검토

☑ 조정액

	현행요율	조정요율
○ 牛, 馬 (원/두)	500	1,200
○ 羊, 豚 (원/두)	130	400

※ 인접도 충남 수수료 : 牛·馬 3,000원, 羊·豚 1,000원

조정완료 9개 시·도 평균수수료 : 牛·馬 1,200원, 羊·豚 383원

☑ 원가보상 비율

구 분	원가보상액	원가보상비율	
		현행요율	조정요율
○ 牛, 馬 (원/두)	3,535원	14%	34%
○ 羊, 豚 (원/두)	1,670원	8%	24%

☑ 조정시 세입비교

	조정전	조정후	증감
計 (백만원)	102	290	188
○ 牛, 馬	33	78	45
○ 羊, 豚	69	212	143

※ 검사두수 산정 : '96~'98년 평균 도축검사 두수

☑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추가부담	증감비율
○ 쇠고기 (정육 500g)	2원	0.033%
○ 돼지고기(정육 500g)	3원	0.086%

IV. 조정검토 의견

☑ 도축검사 수수료는

-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동시에
- 확보된 재원으로 도축검사 업무를 강화하여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 도축검사 신청자 및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牛, 馬는 1두당 1,200원,
豚, 羊은 1두당 400원 으로
-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V. 원가분석표 및 참고자료

□ 소 도축검사 원가 분석표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가액
합 계		3,535원
검사원인건비	1,782,792원 ÷ 25일 ÷ 480분 × 20분	2,971원
여비	115,000원 ÷ 25일 ÷ 480분 × 20분	192원
인쇄제본비	5.3원 × 5부	27원
소모품비	1,500원 × 12월 × 1/2개 ÷ 6,600	1원
합격표시용색소	24,000원 ÷ 500두	48원
위생복	14,000원 × 3벌 ÷ 300일 ÷ 480 × 20분	3원
위생화	9,000원 × 3족 ÷ 300일 ÷ 480 × 20분	2원
도축검사기구	200,000원 ÷ 300일 ÷ 480 × 20분	14원
잔류물질검사(지육)	9,425,000원 ÷ 66,000두	143원
잔류물질검사(생체)	4,009,000원 ÷ 66,000두	61원
미생물오염도검사	1,425,000원 ÷ 66,000두	22원
수분단백비검사	3,340,000원 ÷ 66,000두	51원
※ 비 고		
○ 소 도축두수 : '96~'98년 평균 검사두수		
○ 소 도축검사 소요시간 : 20분		
○ 인 건 비 : 수의 7급 10호봉 기준		
○ 인쇄제본비 : 검사대장, 검사증명서 2부, 일일실적대장, 복명서, 수거증		
○ 소모품비 : 볼펜, 칼, 인주, 스탬프, 풀 등		

□ 돼지 도축검사 원가분석표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가액
합 계		1,670원
검사원인건비	1,782,792원 ÷ 25일 ÷ 480분 × 10분	1,486원
여비	115,000원 ÷ 25일 ÷ 480분 × 10분	96원
인쇄제본비	5.3원 × 5부	27원
소모품비	1,500원 × 12월 × 1/2개 ÷ 6,600	1원
합격표시용색소	24,000원 ÷ 2,000두	12원
위생복	14,000원 × 3벌 ÷ 300일 ÷ 480 × 10분	3원
위생화	9,000원 × 3족 ÷ 300일 ÷ 480 × 10분	2원
도축검사기구	200,000원 ÷ 300일 ÷ 480 × 10분	14원
잔류물질검사(지육)	9,425,000원 ÷ 528,000두	18원
잔류물질검사(생체)	4,009,000원 ÷ 528,000두	8원
미생물오염도검사	1,425,000원 ÷ 528,000두	3원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도축두수 : '96~'98년 평균 검사두수 ○ 소 도축검사 소요시간 : 10분 ○ 인 건 비 : 수의 7급 10호봉 기준 ○ 인쇄제본비 : 검사대장, 검사증명서 2부, 일일실적대장, 복명서, 수거증 ○ 소 모 품 비 : 불펜, 칼, 인주, 스탬프, 풀 등 		

□ 축산물검사원 인건비 산출

(7급 10호봉 기준)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 가 액
합 계		1,782,792원
기 본 급	725,000원	725,000원
기 말 수 당	$725,000\text{원} \times 240\% \div 12\text{월}$	145,000원
정 근 수 당	$725,000\text{원} \times 200\% \div 12\text{월}$	120,833원
체 력 단 련 비	$725,000\text{원} \times 250\% \div 12\text{월}$	151,042원
효 도 휴 가 비	$725,000\text{원} \times 100\% \div 12\text{월}$	60,417원
가 족 수 당	$15,000\text{원} \times 2\text{명}$	30,000원
기 술 수 당	70,000원	70,000원
위 험 수 당	20,000원	20,000원
장기근속수당	50,000원	50,000원
대 우 수 당	$725,000\text{원} \times 6\%$	43,500원
초과근무수당	57,000원	57,000원
복 리 후 생 비	310,000원	310,000원
여 비		115,000원

□ 도축검사 업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구 분	소 요 시 간	
	소	돼지
계	20분	10분
1. 신청서접수 및 대장정리	1분	0.5분
2. 사실확인(가축검사)	3분	1분
3. 도축검사(해체검사)	12분	7분
4. 검사결과 판정·검인	1분	0.5분
5. 관계서류 정리·결재	2분	0.5분
6. 검사결과 통지	1분	0.5분

□ 타 시·도 수수료

(’98. 12. 1. 기준)

시·도	우·마	돈·양	조정계획	시·도	우·마	돈·양	조정계획
서울	590	120	조정중	충남	3,000	1,000	완료
부산	450	90	검토중	전북	1,000	200	완료
대구	1,000	200	완료	전남	400	80	조정중
인천	1,000	200	완료	경북	800	150	완료
광주	1,000	200	완료	경남	1,000	500	완료
대전	450	120	검토중	제주	400	80	조정중
경기	1,000	500	완료	울산	1,000	500	완료
강원	400	80	조정중				

※ 조정완료 9개 시·도 평균 수수료 : 소 1,200원, 돼지 383원

원유검사 수수료 징수 (안)

- 목 차 -

I. 징수의 필요성

II. 현황

III. 징수 검토

IV. 징수 의견

V. 원가분석표 및 보조자료

원유검사 수수료 징수(안)

I. 징수의 필요성

- ☑ 낙농진흥법 개정·시행('99. 1. 1)에 따라
- ☑ 집유업체에서 실시하던 원유의 검사업무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 ☑ 원유 유대결정 및 위생등급의 기준이 되는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및 부족한 검사재료비의 충당을 위하여
- ☑ 집유조합의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사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 ☑ 확충된 재원으로 원유검사 능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낙농업의 발전과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 ☑ 우리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II. 현 황

도내 낙농업 현황

(’98. 6월 기준)

집 유 장	목 장 수	착유두수	연간 원유생산량	
			생산량	소득액
4	939	16,116	105천톤	590억원

※ 유가공업체 : 2개소

원유공영검사 항목별 검사횟수

검사항목	검사횟수	비고
세균수	주1회	유대를 결정하는 항목 으로 필수 검사항목임
체세포수	주1회	
유성분	주1회	
잔류물질	월2회	안전성 검사항목으로 점진적으로 검사 강화
가수검사	월2회	

원유검사 소요인원

- 공무수의사 : 2명
- 검사보조원 : 3명

☑ 검사장비 및 처리능력

(기준 : 950낙농가)

검 사 항 목	일일 검사건수	장 비 명	처리능력 건/시간	보유수
세균수	152	Bactoscan-8000	40	2
체세포수	152	Fassomatic-300	300	2
유성분	152	Milk-scanFT120	120	2
가수검사	76	"	"	"
잔류물질	76	HPLC	2	3

※ 잔류물질 검사 : 간이검사(TTC법), 정밀검사(HPLC)

원유검사 수수료는 도세이며 수입증지로 징수

Ⅲ. 징수 검토

검사 수수료액

<input type="radio"/> 세균수	500원
<input type="radio"/> 체세포수	50원
<input type="radio"/> 유성분	50원
<input type="radio"/> 잔류물질	100원
<input type="radio"/> 가수검사	50원

원가보상 비율

구 분	원가보상액	원가보상비율	
		재료비요율	총원가요율
세균수	1,530원	108.9%	32.7%
체세포수	682원	102.0%	7.3%
유성분(항목당)	917원	121.9%	5.4%
잔류물질	844원	99.0%	11.8%
가수검사	1,209원	100.0%	4.1%

연간 검사수수료

연간 세입 30,780천원

(단위 : 천원)

검 사 항 목	세 수 입	비 고
세균수	22,800	주 1회 검사
체세포수	2,280	
유성분	2,280	
잔류물질	2,280	월 2회 검사
가수검사	1,140	

※ 검사 낙농가 : 950호 기준

우유가격에 미치는 영향

		추가부담	부담율
시유	1,100원(1,000ml)	0.29원	0.026%
총생산원유	590억원(105천톤)	30,780천원	0.052%

IV. 징수검토 의견

집유원유 검사수수료는

- 낙농진흥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소액의 징수로
- 원유검사 재료비를 충당하여 검사결과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낙농업의 발전과 수의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 집유업체 및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균수는	1건당	500원	
체세포수는	1건당	50원	
유성분은	1건당	50원	
잔류물질은	1건당	100원	
가수검사는	1건당	50원	으로

- 징수하고자 합니다.

V. 원가분석표 및 보조자료

□ 세균수검사 원가분석표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가액
합 계			1,530원
검사원인건비		1,782,795원 ÷ 25일 ÷ 480분 × 5.0분	743원
재 료 비	소 계		459원
	인쇄제본비	5.3원 × 5부	27원
	소모품비	1,500원 × 12월 × 1/2개 ÷ 45,600	1원
	위생복	14,000원 × 3벌 ÷ 300일 ÷ 480 × 5.0분	1원
	시약비	Gradient stock sol 등 8종	430원
검사장비감가상각비		149,522,000원 ÷ (300일 × 10년) ÷ 152건	328원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건 비 : 수의 7급 10호봉 기준 ○ 검사소요시간 : 5.0 분 ○ 인쇄제본비 : 검사대장, 검사결과통보 2부, 일일실적대장, 검사성적서 ○ 검사건수 : 낙농가 950 × 4회 ÷ 25일 = 152건 ○ 소모품비 : 볼펜, 칼, 인주, 스탬프, 풀 등 ○ 시 약 비 : 별 첨 ○ 검 사 장 비 : Bactoscan-8000 2대 			

□ 체세포수 검사 원가 분석표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가액
합 계		682원
검사원인건비		1,782,792원 ÷ 25일 ÷ 480분 × 3.25분
재 료 비	소 계	49원
	인쇄제본비	5.3원 × 5부
	소모품비	1,500원 × 12월 × 1/2개 ÷ 45,600건
	위생복	14,000원 × 3벌 ÷ 300일 ÷ 480 × 3.25분
	시약비	Buffer powder 등 3종
검사장비감가상각비		68,298,000원 ÷ (300일 × 10년) ÷ 152건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건 비 : 수의 7급 10호봉 기준 ○ 검사소요시간 : 3.25 분 ○ 인쇄제본비 : 검사대장, 검사결과통보 2부, 일일실적대장, 검사성적서 ○ 검사건수 : 낙농가 950 × 4회 ÷ 25일 = 152건 ○ 소모품비 : 볼펜, 칼, 인주, 스템프, 풀 등 ○ 시 약 비 : 별첨 ○ 검사장비 : Fossometric-300 2대 		

□ 유성분검사 원가분석표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가액
합 계			917원
검사원인건비		1,782,792원 ÷ 25일 ÷ 480분 × 4.0분	594원
재 료 비	소 계		41원
	인쇄제본비	5.3원 × 5부	27원
	소모품비	1,500원 × 12월 × 1/2개 ÷ 45,600건	1원
	위생복	14,000원 × 3벌 ÷ 300일 ÷ 480 × 4.0분	1원
	시약비	Cleaning Agent 등 3종	12원
검사장비감가상각비		128,782,000원 ÷ (300일 × 10년) ÷ 152건	282원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건 비 : 수의 7급 10호봉 기준 ○ 검사소요시간 : 4.0 분 ○ 인쇄제본비 : 검사대장, 검사결과통보 2부, 일일실적대장, 검사성적서 ○ 검사 건 수 : 낙농가 950 × 4회 ÷ 25일 = 152건 ○ 소 모 품 비 : 볼펜, 칼, 인주, 스탬프, 풀 등 ○ 시 약 비 : 별 첨 ○ 검 사 장 비 : Milk-scanFT120 2대 			

□ 잔류물질검사 원가분석표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가액
합 계			844원
검사원인건비		$1,782,792\text{원} \div 25\text{일} \div 480\text{분} \times 5.0\text{분}$	743원
재 료 비	소 계		101원
	인쇄제본비	$5.3\text{원} \times 5\text{부}$	27원
	소모품비	$1,5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1/2\text{개} \div 22,800\text{건}$	1원
	위생복	$14,000\text{원} \times 3\text{벌} \div 300\text{일} \div 480 \times 5.0\text{분}$	1원
	시약비	TTC 등 3종	72원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건 비 : 수의 7급 10호봉 기준 ○ 검사소요시간 : 5.0 분 ○ 인쇄제본비 : 검사대장, 검사결과통보 2부, 일일실적대장, 검사성적서 ○ 검사건수 : $\text{낙농가 } 950\text{호} \times 2\text{회} \div 25\text{일} = 76\text{건}$ ○ 소모품비 : 볼펜, 칼, 인주, 스탬프, 풀 등 ○ 시 약 비 : 별첨 			

□ 가수검사 원가분석표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가액
합 계			1,209원
검사원인건비		$1,782,792\text{원} \div 25\text{일} \div 480\text{분} \times 4.0\text{분}$	594원
재 료 비	소 계		50원
	인쇄제본비	$5.3\text{원} \times 5\text{부}$	27원
	소모품비	$1,5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1/2\text{개} \div 912\text{건}$	10원
	위생복	$14,000\text{원} \times 3\text{벌} \div 300\text{일} \div 480 \times 4.0\text{분}$	1원
	시약비	Cleaning Agent 등 3종	12원
검사장비감가상각비		$128,782,000\text{원} \div (300\text{일} \times 10\text{년}) \div 76\text{건}$	565원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건 비 : 수의 7급 10호봉 기준 ○ 검사소요시간 : 4.0 분 ○ 인쇄제본비 : 검사대장, 검사결과통보 2부, 일일실적대장, 검사성적서 ○ 검사건수 : 낙농가 950×2회÷25일 = 76건 ○ 소모품비 : 볼펜, 칼, 인주, 스탬프, 풀 등 ○ 시 약 비 : 별첨 ○ 검 사 장 비 : Milk-scanFT120 2대 			

□ 축산물검사원 인건비 산출

(7급 10호봉 기준)

구 분	산 출 액	
	산 출 내 역	원 가 액
합 계		1,782,792원
기 본 급	725,000원	725,000원
기 말 수 당	$725,000\text{원} \times 240\% \div 12\text{월}$	145,000원
정 근 수 당	$725,000\text{원} \times 200\% \div 12\text{월}$	120,833원
체력단련비	$725,000\text{원} \times 250\% \div 12\text{월}$	151,042원
효도휴가비	$725,000\text{원} \times 100\% \div 12\text{월}$	60,417원
가족 수 당	15,000원 × 2명	30,000원
기술 수 당	70,000원	70,000원
위험 수 당	20,000원	20,000원
장기근속수당	50,000원	50,000원
대우 수 당	$725,000\text{원} \times 6\%$	43,500원
초과근무수당	57,000원	57,000원
복리후생비	310,000원	310,000원
여 비		115,000원

원유검사 업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단위 : 분)

구 분	소 요 시 간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	잔류물질	가수검사
계	5.0	3.25	4.0	5.0	4.0
1. 신청서접수·정리	0.5	0.5	0.5	0.5	0.5
2. 시료 확인·전처리	1	1	1	2	1
3. 검사·분석·장비운용	2	0.25	1	1	1
4. 검사결과 출력·판정	0.5	0.5	0.5	0.5	0.5
5. 관계서류 정리·결재	0.5	0.5	0.5	0.5	0.5
6. 검사결과 통지	0.5	0.5	0.5	0.5	0.5

검사항목별 시약비 총괄

(단위 : 원)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TTC	가수검사
430	20	12	72	12

※ 잔류물질 정밀검사(정량검사) 재료비는 미포함

가. 세균수검사 시약비

시 약 명	산 출 내 역	시약비(건당)
합 계		430원
Lysing powder	79,200원 ÷ 5,000건	16원
Buffer powder	117,700원 ÷ 3,333건	35원
Gradient stock sol.	236,500원 ÷ 5,000건	47원
Emulsifier	146,300원 ÷ 5,000건	29원
Detergent	117,700원 ÷ 5,000건	24원
Staining medium stock sol.	170,500원 ÷ 10,000건	17원
Enzyme stock sol.	867,900원 ÷ 10,000건	87원
BZ sample	666,600원 ÷ 3,800건	175원

나. 체세포수검사 시약비

시 약 명	산 출 내 역	시약비(건당)
합 계		20원
Dye	200,200원 ÷ 14,400건	14원
Buffer powder	78,100원 ÷ 14,400건	5원
Triton X-100	14,300원 ÷ 12,000건	1원

다. 유성분·가수 검사 시약비

시 약 명	산 출 내 역	시약비 (건당)
합 계		12원
Cleaning Agent	130,900원 ÷ 50 × 5봉/월 ÷ 25일 ÷ 152건	3원
Zero liquid	110,000원 ÷ 50 × 5봉/월 ÷ 25일 ÷ 152건	3원
FTIR Equalizer	130,900원 ÷ 6 × 1봉/월 ÷ 25일 ÷ 152건	6원

라. 잔류물질 검사 : TTC법

시 약 명	산 출 내 역	시약비(건당)
합 계		72원
Skim-milk	40,000원 ÷ 2,500건	16원
TTC	230,000원 ÷ 4,167건	55원
TMP	185,000원 ÷ 1,000,000건	1원

기타 보조자료

□ 축산물검사수수료 비교

구 분	수수료(원)	
	검역원	식약청
1. 축산물 의뢰검사 수수료(법 제5조 제1항 관련)	(시료당)	(시료당)
가. 축산물		
1) 이화학적 검사		
가) 피·에이치(pH)검사	1,100	1,100
나) 비중검사	1,100	1,100
다) 굴절률검사	1,100	1,100
라) 진공도검사	1,100	1,100
마) 미량영양성분(비타민 A·B ₁ ·B ₂ ·나이아신·칼슘·인·철 등)검사(1항목당 정량)	6,000	6,000
바) 잔류농약검사		
○ 동시다성분검사(5종농약기준)	278,400	278,400
- 1농약 추가시 마다	10,300	10,300
○ 단성분검사(1종농약)	81,400	81,400
사) 독소(아플라독소)검사(정성검사)	20,000	20,000
아) 독소(아플라독소)검사(정량검사)	25,000	25,000
자) 우유류 항생물질 검출 검사	4,000	4,000
차) 항생물질검사(정량검사)	25,000	25,000
카) 합성항균제검사(1성분당 정량)	25,800	25,800
타) 성장촉진제검사(1성분당 정량)	180,300	180,300
파) 산화방지제	55,000	55,000
하) 보존료검사	33,000	33,000
거) 착색료검사(타르색소)	13,000	13,000
너) 발색제검사(아질산염)	26,500	26,500
더) 기 타		
○ 적정법	5,000	5,000
○ 기기분석법	30,000	30,000
러) 상기외의 시험(1항목당)	유사시험항 목에 준함	유사시험항 목에 준함

구 분	수수료(원)	
	검역원	식약청
2) 미생물학적 검사		
가) 대장균군검사	5,500	5,500
나) 일반세균수검사	4,400	4,400
다) 유산균수검사	5,500	5,500
라) 대장균구수검사	5,500	5,500
마) 식중독균검사		
○ 살모넬라검사	6,600	6,600
○ 병원성대장균검사	6,600	6,600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i>Clostridium perfringens</i>)	8,800	8,800
○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i>Clostridium botulinum</i>)	8,800	8,800
○ 황색포도상구균(<i>Staphylococcus aureus</i>)	6,000	6,000
바) 진균수검사	5,000	5,000
사) 기타 미생물검사	6,600	6,600
나. 기구·용기 및 포장		
1) 이화학적검사		
가) 페놀검사	1,100	1,100
나) 중금속검사	1,100	1,100
다) 형광증백제검사	1,100	1,100
라) 색소검사	1,300	1,300
마) 염화비늘수지(PVC) 규격검사	22,000	22,000
바)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3,000	3,000

□ 검사성적서등 재교부 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검역원	식약청
검사성적서	1 통	100	100
외국어번역문	1 통	200	200

조례제정시 검사수수료 예상수입

예상수입 : 351,022천원

- 도축검사수수료 289,600천원
- 원유검사수수료 30,780천원
- 축산물가공품검사 18,000천원
- 수출돈육잔류검사 12,642천원

산출기초

- 도축검사수수료 : 289,600천원
소 1,200원 × 65천두 = 78,000천원
돼지 400원 × 529천두 = 211,600천원

- 원유검사 : 30,780천원
유대기준 항목(3) : 600원 × 4회 × 12월 × 950호 = 27,360천원
잔류물질가수 : 150원 × 2회 × 12월 × 950호 = 3,420천원

- 축산물가공품검사
30,000원 × 600건 = 18,000천원

- 수출돈육잔류검사 : 12,642천원
90,300원 × 140건 = 12,642천원

□ 축산물가공품 검사항목

구 분	검사 항목수	검 사 항 목
관능검사	2(2)	이물, 성상
이화학적 검사	23(31)	산가, 조지방, 수분, 산도, 무지유고형분, 타르 색소, 산화방지제(4), 보존료(6), 유고형분, 휘발 성염기질소, 조단백, 유당, 비중, 포스파타제, 지방낙산가, 당분 카제인포스페이트, 아질산이 온, 유지방, 아미노태질소, 비비누화물, 비수화 가, 요오드가
미생물 검사	12(12)	세균수, 대장균, 효모, 살모넬라균, 유산균, 황 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균, 장염비브리오 균, 리스테리아균, 결핵균, 탄저균, 부루세라균
중금속	2(5)	비소, 중금속(4)
잔류물질	2(9)	항생물질, 합성항균제(7)
방사능	1(2)	방사능(2)
기 타	1(1)	굴절률
합 계	43 항목	62 물질검사

□ 축산물가공품 품목

구 분	품목수	세 부 품 목
식육 가공품	26	햄류(6),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 혼합 소시지, 건조소시지, 건조혼합소시지, 반건조소 시지, 반건조혼합소시지, 가열냉동소시지, 베이 컨류(3), 건조저장육, 양념육(육지물), 분쇄가공 품(3), 갈비가공품, 포장육, 기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49	우유류(4), 저지방우유류(5), 유당분해우유(2), 가공유류(3), 산양유, 발효유류(5), 버터유류(2), 농축유류(4), 유크림류(3), 버터류(2), 자연치즈 (4), 가공치즈(4), 분유류(4), 유청류(3), 유당, 유 단백 가수분해식품(2)
알가공품	9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 분, 가열성형제품, 피단, 기타 알가공품
아이스크 림제품류	6	아이스크림류(2), 아이스크림분말류(2), 아이스 크림믹스류(2)
특수 영양식품	2	조제유류(2)
식용유지	2	우지, 돈지
기타 식품류	1	추출가공식품(흑염소, 육골즙 등)
합계	95개 품목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관련기관 주요규정 비교

구 분	축산물검사수수료	도축검사수수료	원유공영검사수수료	검체반환
충청북도축산 위생연구소 운영조례(안)	국립수의과학검역 원고시 수수료액 적용(안 제5조)	운영조례 일원화 소 1,200원 돼지 400원 (안 제 5조, 별표 2)	검사실시후 6개월 경과부터 징수 (안 제5조, 부칙 제2조)	반환하지 않음 검체량 최소화로 검 사후 이용가치 없음 (안 제8조)
충청북도보건 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식품의약품·국립보 건원시험의뢰규칙 수수료액 적용	검사항목 없음	검사항목 없음	반환하지 않음 (단, 이용가치가 남 아 있는 경우 7일 이내 의뢰인 요구 시 반환)
경기도축산 위생연구소 운영조례	국립수의과학검역 원고시 수수료액 적용	조례 미포함 소 1,000원 돼지 500원	검사항목 없음 (조례개정 추진중)	반환하지 않음
충청남도보건 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식품의약품·국립보 건원시험의뢰규칙 수수료액 적용	조례 미포함 소 3,000원 돼지 1,000원	상동	반환하지 않음 (단, 이용가치가 남 아 있는 경우 7일 이내 의뢰인 요구 시 반환)
강원도가축 위생시험소 운영조례(안)	국립수의과학검역 원고시 수수료액 적용	조례 미포함 소 1,000원 돼지 200원	상동	상동
경상남도축산 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상동	조례 미포함 소 1,000원 돼지 500원	상동	반환하지 않음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고시 별표1에 의함	검사항목 없음	상동	반환하지 않음 (단, 이용가치가 남 아 있는 경우 7일 이내 의뢰인 요구 시 반환)